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-39호

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『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』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-18호)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6년 5월 11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

1. 준등기 우편요금 : 200g까지 1,800원(정액요금)
※ 단, 소형포장우편물의 경우에는 500g까지 허용

2. 준등기 부가취급 수수료
가. 전자우편 :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」 적용
나.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·성명 변경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 수수료

구 분	수수료
우편집중국으로 발송 전	무료
우편집중국으로 발송 후	기본통상우편요금

3.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